

2022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진급시험 추가 공지

1. 시험대상

본 법학전문대학원 2023학년도 진급 대상자

2. 합격기준 및 성적처리 방법

- 제1차 및 제2차 진급시험 각 40%를 넘어야 합격을 인정하며, 제1차 및 제2차 진급시험의 성적사정을 각각 진행함. (학사에 관한 시행규칙 제41조(성적사정) 제2항)
- 정당한 사유 없이 진급시험을 결시하는 경우 미응시로 처리하며, 해당 시험은 0점 처리함
- 제1차 진급시험에서 40%미만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에는 1학기는 유급 처리되고, 유급된 자는 한 학기 휴학을 할 수 있다. (학칙 제31조(휴학) 제5항)
- 진급시험은 동일한 학년도에 진행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하며, 다른 학년도를 각각 인정하지 아니함
예시) 2022학년도 1학기를 마친 후 휴학인자가 2022학년도 제2차 및 2023학년도 제1차를 응시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함. 2023학년도 제1차 및 제2차를 응시하여야 함

3. 진급시험에 대한 이의신청

- 진급시험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성적공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함

- 이의신청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심의기구에서 심의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함

4. 기타 진급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공지함

2022. 5. 24.

법학전문대학원장

